
2016 제20대 총선 사회적기업 제안 공약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제안 –

2016. 3.



사단
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CONTENTS

-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9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인 문제 해결, 장애인 문화 개선,
다문화(탈북) 가정의 안정적 정착, 기타 사회문제 해결

-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14
/ 사회책임 조달 환경 구축, 대국민 홍보,
공공사업 및 공공자산 위탁 운영

- ❖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 제·개정** 18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국회 사회적경제위원회

- ❖ **사회적기업 자금 조달** 21
/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 사회성과 인센티브제도,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활성화

들어가며

자본이 순환되지 않고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입되는 흐름은 경제적 양극화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직결된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은 저성장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외환위기, 세계경제위기 등의 국제적 위기가 직면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 중심의 고속성장 유도를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했기에 사회적·경제적 병폐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前.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구람 라잔(Raguram Rajan)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등은 세계적 위기의 근본원인은 소득 불평등이며, 금융시스템 개선이 아닌 불평등 해소가 경제 위기의 해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위기의 타계를 위해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기관·기업의 사회적책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해법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시장의 한계로 인해 사회·경제 문제를 지역과 공동체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경제)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 또는 환경문제 해결 관련 사회적기업은 환경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자원과 환경의 고갈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UN(국제연합)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새천년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대한 후속 의제로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고 발표하였다. 이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5P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 목표내용을 살펴보면 빈곤, 기아, 식량안보, 보건 및 웰빙, 교육 보장, 물·위생시설 접근성, 에너지 접근, 일자리, 혁신, 불평등, 지속가능한 거주지, 성평등, 여성, 평화, 기후변화, 육상생태계 등 대부분의 항목들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중심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주요 목적이 이윤 창출 극대화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며, 사회적 소외와 실업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익적 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 또는 기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복지·공공서비스·사회문제해결·사회적가치 창출 등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업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며,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상생의 경제를 열어나가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를 펼쳐온 결과, 2014년에는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여야 각 당의 사회적경제위원회 발족,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사회적가치 기본법안’ 및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발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법제화 개정안 발의 등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말미암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경제적·사회적 보완으로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이 핵심적 역할을 해낼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경제적·사회적 역할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열악한 생태계의 환경이 발목을 잡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성의 사회적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로 공공성의 확보와 경제·복지·사회 정책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분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책임 제고방안, 김지숙,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2011).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생태계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기틀이 올바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가능하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

의회(김정열 상임대표, 이하 한기협)는 2016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사회적 기업 당사자의 의견과 사회적기업 전문가의 연구 결과물로 빚어진 ‘2016 제20대 총선 사회적기업 제안 공약’을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공약 및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 제안할 ‘2016 제20대 총선 사회적기업 제안 공약’은 사회적기업의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국가의 정책사업들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테마를 설정하였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활성화 방안, 관련 제도의 제·개정, 자금 조달 경로 확충 등을 구성하였으며, 어려운 내용보다는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낯선 후보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기협은 공약 제안을 통해 국회의원 총선거의 입후보자가, 나아가서는 최종 당선자인 국회의원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2016 제20대 총선 사회적기업 제안 공약’의 수용과 실행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문제해결과 사회통합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개 요 >

- ❖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가치에 대하여 국가의 정책적·전략적 목표와 부합하는 내용들을 연계 및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

1 제안 배경

-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곳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정의)
 - 특히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상,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조직의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기업의 영위 자체가 사회적 가치·목적 창출 등의 사회공헌과 직결됨을 의미함.
- ◇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목적 달성의 목표들을 국가의 정책과 연계할 경우, 사회문제 해결 등의 전략적 목표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해나갈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달성에 대한 주된 대상인 취약계층의 경우,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다문화, 범죄피해자 가족, 갱생보호 대상자 등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회통합, 사회문제 해결 등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풀어갈 수 있음.

◇ 또한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도 계속 상승하는 만큼 사회적 목적 달성도도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통합 및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부 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은 2008년 231.8%에서 2013년 965.2%로 높아지고 있으며, 2007~2013년 중 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95%이상이 생존(경영활동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수혜규모는 2008년 31만 명에서 2013년 말 기준 2,524만 명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가치 창출규모가 5년 동안 약 84배 가량 대폭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2 제안 내용

1)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 다문화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4년 말 기준, 1,251개소가 총 27,9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취약계층은 15,815명을 고용하여 56.6%의 높은 취약계층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고용 없는 경제성장 등의 사회·경제 문제의 대안으로 부상함. (예비 사회적기업 1,466개소의 근로자수를 합하면, 총 근로자수는 42,410명)
- 근로자의 사회적기업 취업 전후 소득을 비교해보면 일반 기업보다 사회적기업 취업 후 소득이 약 19.4%가 증가하였고¹⁾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약 30.5%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취약계층 소득증대) 등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음.

1) 사회적경제 확산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의규 외, 20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확보**

- 공공근로사업이 단순한 소득보조와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는 한계를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극복 가능함.
-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 디자인을 혁신하여 경력과 숙련을 쌓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는 재구성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자리 전환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의 취약계층 직업능력(훈련)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

- 정부·지자체·고용센터·위탁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직업능력(훈련)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직업숙련도를 제고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증대됨.
- 여기에 숙련된 취약계층을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절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함.

2) 노인문제 해결

◇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노인 의료·돌봄·식품 서비스 확대**

- 사회적기업의 경우,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함.
 - ☞ 건강체크·예방 등의 건강 거점 마련, 빈곤·독거 노인에 대한 방문 보건·의료·돌봄·상담 진행 및 추후 관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락 제공, 자체 빈곤·독거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 진행, 노인 자살예방 프로젝트 수행 등
- 이에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위탁할 경우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으며 지속적 관리를 통한 노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음.

◇ **빈곤·독거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 서비스 위탁과 더불어 주거복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빈곤·독거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 주거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음.

3) 장애인 문화 개선

◇ 사회적기업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개선

-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임금요건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단순한 작업자가 아닌 전문인력으로서의 교육·양성 과정을 거쳐 전문성과 자존감을 확보하는 등의 자립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통합 문화 조성

- 일부 장애인 관련 사회적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① 장애인의 재활 및 심리 치료와 사회성 훈련 등의 종합 진행, ② 장애아동의 양육자 스트레스 완화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돌봄, ③ 장애가족의 문화적·심리적 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 형제·가족 동반수업 실시 등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가정에서부터 장벽을 없애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 (자막, 점자, 음성 지원 등) 방송·영화·미술·도서·체험 등 문화예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사회통합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다문화(탈북) 가정의 안정적 정착

◇ 사회적기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전문성에 대한 숙련과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임금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탈북 가정 포함)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의 다양성 확충

- 다문화와 관련하여 일부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고 있는 방송·도서 콘텐츠 등을 활용하고 지원·확산하여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함께 사회통합을 이끌고, 문화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5) 기타 사회문제 해결

◇ 청년 일자리 창출

-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요하는 사회적기업에 청년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하여 청년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른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해결 능력(사회적 가치 창출)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

- 청소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오프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성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직업 체험·훈련과 진로 상담 등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서의 양성과 함께 탈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빈곤·결식 아동 문제 해결

- 빈곤·결식·결손가정 아동에 식품·돌봄·교육 분야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② 방과 후 돌봄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③ 방과 후 교실로 학업능력 등을 보완하여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함.
- 유년시절부터 사회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 지속가능한 환경

- 사회적기업 분야 중 서비스 또는 영업 활동이 환경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사회적기업 중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환경적 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이에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고, 전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점차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큰 밑거름을 만들 수 있음.

II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 개 요 >

- ❖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보다 많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의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제안 배경

- ◇ 사회적기업은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복지·공공서비스·사회문제해결 등의 사회적가치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업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의 이윤 창출이 확대될 경우, 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② 사회문제 해결능력이 제고되며, ③ 사회적가치 창출 규모가 증대됨.
- ◇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접 지원책으로 판로지원과 홍보 등이 절실히 요구됨.
 - ☞ 201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총괄보고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가의 전수조사에서 기관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판로개척의 어려움’이 45.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 17.3%, ‘근로자의 역량 부족’ 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제안 내용

1) 사회적책임조달 환경 구축

◇ 사회적책임조달을 통한 공공조달 혁신

- 공공조달은 GDP의 약 11%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상당하지만, 최저가낙찰에 근간한 운영과 일반시장과 유사한 경쟁구조 등을 통해 공공적·사회적 목표와는 괴리감이 발생함.
- 이미 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이 세금의 지출이라는 부분에서 책임성 부과와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회적책임조달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에 국가재정의 투입을 통한 공공조달이 단순한 재화 구매에 그치지 않고, 2차적으로 생산되는 공공적 목표와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평가기준에 포함하여 공공조달이 재화 구매과정에서의 최적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맞물려 현재 조달정책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정책(약자 지원 항목)을 사회적가치 창출과 공공성의 확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책임조달의 전략적 정책 파트너로 이해하는 근본적 인식전환이 요구됨. (⇒ 사회적책임조달 가이드 발행 또는 구매담당자 교육)

◇ 사회적책임조달 관련 제도 개선

- 조달에 관한 기본적인 신인도 등의 평가항목에 지역고용, 고용기회, 양질의 일자리, 사회통합, 취약계층 고려, 환경, 사회적책임 등 사회적가치 배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조달계약 심사·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함 .
- 사회적책임조달의 관점에서 사회적가치 생산이 주된 설립목적 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하여 기존의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사회적기업 간 제한 경쟁입찰제도 또는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제한경쟁입찰사유 및 수의계약사유에 사회적기업의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요구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일정 이상의 구매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 제고를 연동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장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4년)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공기관우선구매 제도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이 20.6%, 사회적가치의 공유·확산 및 환경조성이 14.7%로 나타남. 가장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17.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공공사업 및 유희공간 위탁 운영

◇ 공공사회서비스의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확대

- 현재 사회적기업 중 60% 이상이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 위탁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위탁운영을 확대하면, ①공공성을 더욱 확보하고 ②안정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③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하며, ④신규고용창출과 함께 ⑤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상승, 근무환경 개선 등 노동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유희공간의 사회적기업 운영 또는 공간디자인 위탁

- 유희공간을 사회적기업이 공유공간으로 디자인하고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방치된 공간들을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코디네이팅하거나, ② 공유경제 등의 지역재생 거점으로 구성하고, ③ 또는 청년이나 노인 세대가 공유주거형태(세어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을 통해 유희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공간의 재설계가 필요함.

☞ 주거 또는 공간디자인, 공유경제 관련 사회적기업 분야가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기업들은 상기의 내용들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 창출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친환경주거, 복지 등의 사회적가치를 내포하고 있음.

- 사회적책임조달의 관점에서 사회적가치 생산이 주된 설립목적 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하여 기존의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사회적기업 간 제한 경쟁입찰제도 또는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요구됨.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

- 공공기관 근로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기업 제품 이용을 통한 윤리적 소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매점 또는 카페 등의 설치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매점/카페 설치 는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경영개선 등을 도모하고, 운영 근로자 고용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3) 대국민 홍보

◇ 사회적기업 통합브랜드 개발

- 국가차원의 사회적기업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은 안전하고 사회적가치 함유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 사회적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판로확대를 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기업 통합브랜드인 ‘웰페어 이탈리아(Welfare Italia)’를 론칭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

◇ 공익광고 제작·편성

- 사회적기업의 공공성 또는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여 공익광고 등을 제작·편성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인지도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Ⅲ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 제·개정

< 개 요 >

- ❖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들을 발굴 후 제·개정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도모

1 제안 배경

- ◇ 사회적경제로 통용되며 지향점이 유사한 사회적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 및 관련 기관·부서, 행정 처리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정책과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 등이 나타나는 바, 이를 개선할 통합적인 제도의 기틀 마련이 필요함.
- ◇ 사회적기업에 관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민간네트워크 지원, 판로 지원 등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이 요구됨.

2 제안 내용

1)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 사회적경제의 실체 인정
 -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임시적이거나 불완전한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의 법률적 정의와 함께 범주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통합 지원체계 마련

- 미션의 지향점은 유사하지만 사회적경제의 각 개별주체에 대해 소관 부처가 소관 사업과 성과 중심의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어 지원이 중복되거나 유사 사업이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 폐단을 낳고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통합적인 지원·관리·사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 기본법 형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야 제정안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육성, 지원, 사회적금융 등을 포괄하고 있어 기본법이 아닌 실행법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충돌의 소지가 많아 국회 소관위(기재위)의 통과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정의, 범주,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 정책 방향과 원칙, 행정 및 거버넌스 체계 등 사회적경제의 개별성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개별법의 근거법과 매개법으로서 골격을 갖추고, 지원, 육성, 사회적금융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개별법 형태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기본법 내에 제정 유도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구성하는 정도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2)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 당사자조직의 법정단체화

-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을 일궈냈지만, 경영기반은 부실하거나 오히려 지원 유인책을 빌미로 인증 기본 요건만 충족하여 지원제도의 수혜만을 목적으로 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포장된 기업들이 일부 존재하면서 질적인 성장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불건전 사회적기업을 정화하고 질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한정적인 인력만으로 관리·감독의 한계에 봉착함.
- 이에 당사자조직의 설립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전국 단위의 당사자조직의 풀

을 활용하여 자정기능이 가능하도록 윤리강령 제정·시행을 통한 자율규제와 징계권 부여 등이 필요함.

- 또한 당사자조직을 통해 개별 사회적기업의 현안·문제점·의견 등을 모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조의 틀이 마련될 수 있음.

◇ 판로지원 근거 마련

- 사회적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존성을 낮추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판로지원이 가장 필요함.
- 하지만 판로지원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로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네트워크 지원 근거 마련

- 사회적기업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 개선의지를 가지고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자발성·주도성이 발현된 원리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자발성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 주도로 조직된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시 사회적기업 간 협업 및 상생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기본적인 지원의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3) 국회 사회적경제위원회

◇ 국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 제20대 국회는 여야별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고, 비전을 수립하며, 제도적 보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국회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는 문제의식을 통해 민간 주도적으로 형성된 만큼 국회 사회적경제 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IV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 개 요 >

-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부담을 안고 경영을 영위함으로써 인해 자금기반이 취약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의 통로를 확충시켜주는 것이 필요함.

1 제안 배경

- ◇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가치 창출로 인해 시장경쟁력과 생산력이 낮거나, 영업이익 창출이 어렵고, (사회)혁신사업의 시도 단계로 이익창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기업보다 자금 등의 경영기반이 취약함.
- ◇ 이렇게 취약한 경영기반으로 인해 담보 등의 보증력도 약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금융 대출 등의 자금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며, 인건비 등의 비용지원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
- ◇ 사회적기업이 자금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반영한 금융상품이나 자금조달의 경로를 다양하게 확충시켜주는 것이 필요함.

2 제안 내용

1)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

◇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반영한 금융상품 설계

-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재무적인 성과나 상황 등을 가지고 대출 등의 심사를 할 경우, 사회적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애로점이 따름.
-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부문 등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금융상품 등을 설계하여, 이러한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한 사회성과를 금융권의 사회공헌과 연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는 상생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활성화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함.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성과나 공공성, 사회적 목적 등을 평가하여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 자본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사회적거래소 설립

- 사회적인 프로젝트 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 있는 투자자를 중개하는 사회적거래소를 설립하고, 사회적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세제혜택 등의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담보하지 못하는 사회문제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이에 대한 해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사회적거래소의 설립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2) 사회성과 인센티브제도

◇ 사회성과지표 개발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대하여 이를 감당하기 위한 재무적 손실 등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회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성과 인센티브제도 도입

- 사회성과지표가 개발 되면 이에 따른 사회성과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보상, 판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또한 앞서 언급한 사회적기업 특성 반영 금융상품 개발,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거래소 및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등을 사회성과지표와 연계하여 대출요건, 세제혜택 등을 설계·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3)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활성화

◇ 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 공제기금은 사회적기업이 가입하고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등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기업에, 형성된 기금을 대출과 같은 재원으로 투입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협동·자조·상생의 기금임.
- 현재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기업 공제기금의 활성화 안전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에 공제기금 조항을 마련하여 기금의 용도와 목적, 사업내용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 자본의 유인도 기대할 수 있음.

◇ 민간 출연 보상

- 사회적기업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공제기금에 대해 민간이 출연금 등의 재원을 투입할 경우,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여 민간 재원을 더욱 유인하는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